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95	접수년월일	2005. 6. 13
청 원 인	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	
	성 명	임 청 규 외 125명	주민등록번호
소개의원	김 춘 수 의 원 (한나라당, 영등포구 제3선거구, 건설위원회)		
건 명	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변경에 관한 청원		
소 관 위 원 회	도시관리위원회		

요 지

- 서울시의 “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(2003. 5. 14)”에 의하면, 기존 주택 철거 후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2/3이상일 것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
 - 2004. 11. 18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4구합 26406 판결에 의하면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, 노후, 불량주택에 관한 주택 건설사업 규정이 있는 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”을 근거로 시행하는 서울시 “단독주택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”의 공동주택건설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건물노후도 기준이 없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민영주택건설사업(주택건설사업자, 지역, 직장조합 등)까지 동 지구단위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을 제한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사례와
 - 2005. 3. 17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”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노후, 불량건축물이 준공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으니
 - 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”의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을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을 토대로 완화시켜서 서울시의 건축물 노후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개발을 못하고 있는 영등포구 신길7동 1737번지 일대를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
- ※ 본청원은 2003. 10. 2 접수되어 제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(2003. 12.19)에서 채택되어, 완화적용이 곤란하다는 결과의 재청원임